

##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탐색을 위한 국제비교

석재은\*  
(한림대학교)

김봉근  
(서울대학교)

임병인  
(사회보장정보원)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노령소득, 소득배분, 분배적 정의, 국제비교, 세대 간 공평성, 계층 간 평등, 젠더 평등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3A2044456).

\* 교신저자: 석재은, 한림대학교(seokje@hallym.ac.kr)

■ 투고일: 2016.4.30 ■ 수정일: 2016.6.14 ■ 게재확정일: 2016.6.16

## I. 서론

전세계적으로 고령사회 및 저성장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높은 경제성장율의 뒷받침속에서 복지국가 확대기에 약속했었던 노령층에 대한 관대한 소득배분 규칙을 축소 변경하려는 압박이 높아졌다.<sup>1)</sup> 특히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 소득배분의 공정성, 즉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정성(equity of intergenerational distribution)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대중 매체에서도 풍요로운 노령층과 궁핍한 근로연령층을 대비시키며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축소의 분위기를 정당화해왔다. 199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이루어져 온 복지재편의 역사는 연금개혁을 통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축소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Yamada, 2002; Esping-Andersen, 2002; Bonoli, 2003; Rhodes & Natali, 2003; Wolf, 2003; Bolini & Shinkaw, 2005; Ferrera, 2005; Holzmann & Hinz, 2005; Grech, 2013).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2002)은 그가 편저한 저작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에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특히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새로운 세대 간 계약(new intergenerational contract)에 입각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또한 OECD(2013)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Aging Society] 보고서는 현 노령층에게 소득배분이 지나치게 치우쳐있다는 전제하에서 세대 간 정의의 관점에서 노령층에게 편향된 소득배분을 수정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sup>2)</sup>

그러나 한국의 현 노령층은 풍요로운 연금을 누리는 선진국의 노인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한국은 노령층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연금제도의 역할이 여전히 미흡하여, 노

---

1) 자원배분이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며, 소득배분도 자원배분의 일부이므로 자원배분으로 명명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이 논문의 초점이 명확히 소득배분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소득배분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2) OECD(2013) 보고서는 OECD 29개 국가의 고령사회 세대 간 정의를 환경, 사회, 경제 및 재정, 사회지출의 측면 등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종합적인 세대 간 정의 지수(index)를 개발하여 국가들의 세대 간 정의를 평가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아동빈곤율이 노인빈곤율보다 높은 경우 세대 간 공정성이 낮고, 그 반대의 경우는 세대 간 공정성이 높은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아동빈곤율/노인빈곤율 < 1인 경우는 세대 간 공정성이 낮지만, 아동빈곤율/노인빈곤율 > 1인 경우, 그 값이 작을수록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정성이 높은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노인빈곤율이 아동빈곤율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한국과 같은 경우는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정의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고 있기도 하다.

인 2명 중 1명이 빈곤할 정도로(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인 49.6% 수준임(OECD, 2015))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아동빈곤율의 4배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수준이지만, 아동빈곤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석재은, 2012).

이와 같이 국가마다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상황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은 노령층의 부양부담을 둘러싸고 현대 복지국가에게 커다란 도전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마일스(Myles, 2002, p.134)는 인구고령화에 의해 제기되는 주요한 정책도전은 인구학적(demographic) 혹은 경제적(economic) 문제라기보다는 분배(distributional)의 문제로 제기된다고 하였다. 즉, 인구 5~6명 중 1명이 노령층인 인구고령화로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양비용이 상승하고 저성장사회이기 때문에 부양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인구 및 경제문제로 접근하면 위기론만 증폭될 뿐이다. 따라서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 소득배분의 조정과 노령층 내 소득배분의 조정 등 세대 간 및 세대 내에서 어떻게 소득배분의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실현할 것인가의 분배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구고령화에 직면하여 현대 복지국가에게 주어진 과제는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세대 내 연대(solidarity) 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전환(transition)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대 간 및 세대 내 분배의 정의(distribution of justice) 측면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OECD 국가들의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국가 비교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분배, 세대 내 분배의 각각의 측면에서 병렬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분배 및 세대 내 분배의 적절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여 세대 간 및 세대 내 소득배분의 정의가 통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구성하는 평가기준들을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 유형들을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레짐들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노령층 소득배분이 복지국가 레짐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유형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친화적 결합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만들어주는 원인조건들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세대 간 및 세대 내 분배의 정의 측면에서 분석한 모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령층 소득분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령층 소득분배의 적절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노령층에 대한 소득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EU에 의해 공유된 연금개혁의 10대 목표를 보면, 세대 간 공평성, 세대 내 연대와 젠더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건실한 경제와 건전한 공공재정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

<연금개혁을 위한 EU 10대 원칙>

1. 모든 노인들이 괜찮은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공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활동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모든 개인들에게 적절한 연금제도의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고 경제활동인구와 은퇴기간의 비율이 가능한 유리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고령 노동자의 참여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한다.
  5. 연금 공공지출을 GDP의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Growth and Stability와의 조화를 보장한다.
  6. 기여수준 및 세금과 연금급여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노동인구와 은퇴인구 간의 공정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7. 사적연금제도가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관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8. 연금시스템이 유연성, 보장성, 노동시장의 이동성 요구와 조화되어야 한다.
  9. 성차별 철폐 관점에서 연금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10. 더욱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연금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2002)은 노후소득보장 재구축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약은 두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현재와 미래의 시민들 모두에게 노후소득보장이 지속가능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퇴직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Esping-Andersen,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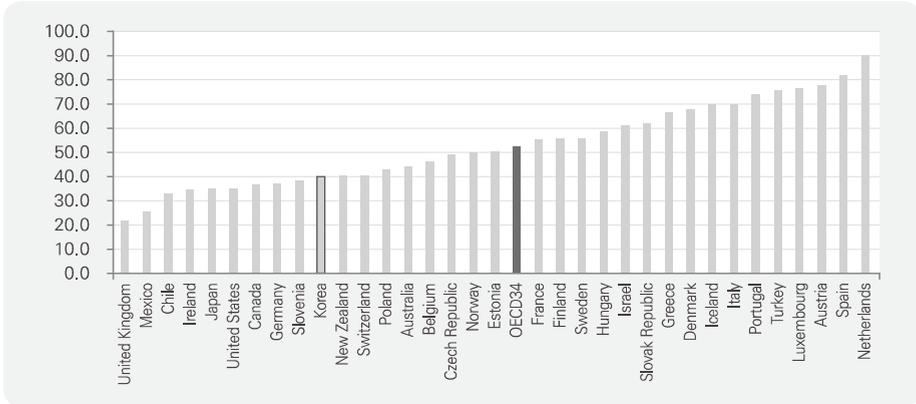
마이스(Myles, 2002)는 세대 간 소득배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머스그레이브(Musgrave, 1986)가 제안했던 고정비례비율(fixed relative position: FRP)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핵심은 미래의 불확실한 인구 및 경제변화에 대응하여 세대 간에 위험을 공평(fair)하게 나눌 수 있는 유연한(flexible) 대응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연금급여율을 고정하는 고정급여율(fixed replacement rate: FRR)은 노후세대에게만 이익이 되고 근로세대에게 부담이 모두 전가되는 구조인 반면, 각출률을 고정하는 고정각출률(fixed contribution rate: FCR)은 수급자인 노후세대에게 부담이 모두 전가되어 급여수준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고정비례비율(fixed replacement rate: FRR)은 기여와 급여수준이 노령수급자수에 대한 노동인구수의 비율을 일정하게 고정하는 수준에서 조정된다. 고정비례비율은 인구와 경제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라 세율은 증가하지만 급여수준도 역시 감소함으로써 위험을 세대 간에 비례적으로 나누도록(proportional sharing) 할 수 있다”(Myles, 2002, p. 144).

김용하(2011)는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 국제비교]에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보장성, 형평성,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세계의 연금개혁 초점이 연금 재정 지출의 안정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노후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태일(2015)은 한국 국민 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정 수준에 대한 평가는 근로연령소득 대비 적정 연금급여율, 즉 필요소득대체율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Abatemarco, 2009; European Commission, 2010, 2012a, 2012b; Grech, 2010, 2013).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2015]에서 OECD 34개 국가의 공적 및 사적 의무연금급여의 평균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다.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은 평균 52.7% 수준이며, 평균소득의 50%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4.8%, 평균소득의 150% 고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47.5%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자 기준 연금급여율은 최고 90.5%(네덜란드)였고, 최저 25.5%(멕시코)였다(OECD, 2015, p.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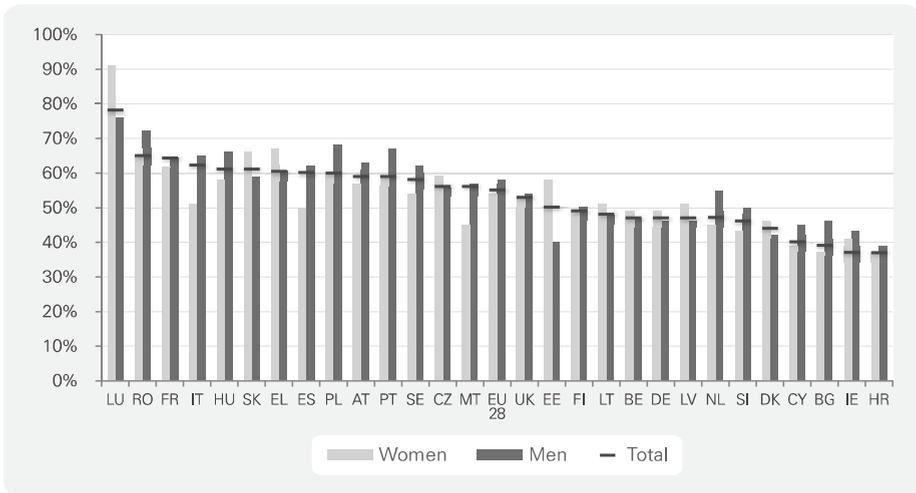
그림 1. OECD 회원국의 의무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평균소득자 기준)



자료: OECD. (2015). p.141.

European Commission(2015)는 공적 및 사적연금을 모두 합한 총연금소득 65~74세 중위값 대비 50~59세 중위 근로소득으로 산출된 총연금소득대체율(aggregate replacement ratio: ARR)을 조사한 결과, EU 28개국 평균소득대체율은 남성의 경우 58%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54%로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2015, p.113)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2. EU 회원국의 성별 총연금소득대체율 (65~74세 중위연금급여/50~59세 중위근로소득)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5). p.113.

한국의 노령층의 필요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연구로, 석재은(2003)은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에서 노령가구의 억압된 낮은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한 노령가구의 필요소득수준은 근로연령가구 소득 수준의 평균 61% 수준이라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며,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전승훈 등(2009)은 근로소득자가 은퇴 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총액이 근로기간 중의 소비활동에 근거한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측정된 결과, 평균 59.97% 충족에 그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정성과 더불어 세대 간에 총량적으로 분배된 자원을 세대 내 소득계층 및 젠더 집단별로 어떻게 정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할당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2002)은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대내 정의(intra-generational justice)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대내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을 늘리는 것, 빈곤선 이상으로 노후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대 간 사회계약은 일과 연금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와의 관계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이슬(Myles, 2002)는 연금개혁 전략에 있어서 저소득층과 무급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퇴직자 간 세대내 배분 문제는 퇴직연령이나 수급연령을 상향할 경우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나 저임금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최소연금을 보증하고 기여체계에서 선별적 개인 간 이전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여성은 소득기간 짧고 수명은 길기 때문에 자녀양육 등 돌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나 제도적 배려가 없다면 소득이나 기여와 급여를 연계시키는 개혁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Myles, 2002, pp.168-169).

한편, 임병인과 전승훈(2005), 김경아(2012)는 세대 간 배분된 자원이 노령집단 내에서 소득계층 간에 얼마나 고르게 분배하였는가를 소득불평등도 측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석재은(2013)은 [한국의 노령여성이 왜 특별히 가난한가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노령여성이 유독 가난한 원인이 노령집단이 근로연령집단 등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소득배분의 불이익을 받는 노령 효과 때문인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소득배분에서

배제되는 '젠더'효과 때문인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노령여성의 빈곤은 젠더효과와 노령효과가 모두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노령효과가 더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권문일(2006), 류연규와 황정임(2008), 석재은(2012)은 연금수급의 젠더 격차에 대하여 분석하고 여성연금 수급권 격차 축소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 2.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평가기준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고령사회에서 소득배분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근로연령세대와 노령세대 간에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연금개혁을 통해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약속을 축소 조정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은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equity) 확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어 왔다(Yamada, 2002; Esping-Andersen, 2002; Bonoli, 2003; Rhodes & Natali, 2003; Wolf, 2003; Bolini & Shinkaw, 2005; Ferrera, 2005; Holzmann & Hinz, 2005; Grech, 2013; OECD, 2015; 김용하, 2011).

이와 같이 OECD, EU 등에서 세대 간 소득배분의 정의(justice), 공평성(equity)에 주목하는 맥락은 지난 복지황금기에 노령세대에게 약속한 소득배분의 몫이 현재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상황에서는 지나치기 때문에 소득배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49.6%로 노령세대에 대한 소득배분이 근로연령세대에 비해 오히려 과소하다. OECD(2013)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Aging Society] 보고서에서는 세대 간 균형적 소득배분을 세대 정의로 규정하지 않고 노령세대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득배분을 세대 간 정의로 규정한 결과, 한국이 고령사회의 세대 간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된 국가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령층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소득배분으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한 것을 적절한 소득배분으로 볼 수는 없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평가는, OECD(2013) 세대 간 정의 보고서에서와 같이 근로연령층이 노령층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 소득배분의 지위를 갖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얼마나 공평하게 균형적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는 노령세대에 대한 소득배분의 일방적 축소라기보다는 균형화(balancing)이며, 세대 내 분배정의에 입각하여 저소득 노령층 및 여성

노령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완조치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본소득보장을 담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yles, 2002; Esping-Andersen, 2002; 김용하, 2011; 석재은, 2014).

그러므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은 세대 간 공평한 균형적인 소득배분과 세대 내 정의로운 소득배분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노령층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노령층에 대한 최소소득보장을 기본전제로 한 상태에서 근로연령층과의 상대적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접근을 채택하고자 한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측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대적 기준의 설정없이 노령층과 근로연령층과의 상대적 소득배분 수준만 평가한다면,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이라고 명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노령층 소득배분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는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를 고정된 한 축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근로연령층과의 상대적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절대적 기준 및 상대적 기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접근을 채택하고자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세대 내 계층 간 분배를 평가할 때에도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를 기본으로 하고 세대 내 계층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또한 세대 내 젠더 간 분배를 평가할 때에는 여성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남성노령층과의 절대적 및 상대적 기준에서 여성노령층의 소득배분 적절성을 평가하는 접근을 채택하고자 한다.

### III.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국가 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 30여 개국의 미시경제적 소득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소득자료(Luxembourg Income Study: 이하 L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점을 기준으로 가

장 많은 국가비교가 가능한 WAVE VI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을 개인단위 소득으로 삼을 경우 가구소득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 가구 내 남녀소득의 차이와 개인별 이전소득의 차이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많은 국가가 개인별 이전소득,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 등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아 결국 이 연구에서는 가구단위 소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인 빈곤율 측정은 가구단위로 분석하여야 하며, 소득계층도 가구단위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하고,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가구단위 소득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단위 소득으로 분석할 때, 가구규모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sup>3)</sup> 소득의 화폐단위는 각 국가의 화폐기준으로 하였다.

소득기준은 개인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분가능한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였다.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시장소득(market income)에 사회보장 등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을 합한 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tax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을 제한 소득으로, 실제 처분가능 소득을 의미한다.

---

$$\text{가처분소득} = \text{시장소득} + \text{이전소득} - \text{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

노령층에 대한 세대 간 소득배분을 논의할 때,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금소득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여 실제로 처분가능한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 국제 비교를 할 때, 개인의 입장에서 처분가능한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비교기준을 삼는 것은 국가 간 공적 및 사적 소득원 구성 등 사회제도적 차이와 관계없이 실제적인 소득배분의 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가별로 복지레짐에 따른 공적 및 사적 소득원 구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의 처분가능한 소득의 측면에서 비교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세대 간 소득배분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접근을 채택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Y^* = Y_i / \sqrt{s_i}$  ( $Y^*$ 은 균등화 소득,  $Y_i = i$ 의 가구소득,  $s_i = i$ 의 가구원수)

노령층 소득은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근로연령층 소득은 25~59세 가구주 가구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소득배분을 명확히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 국가의 연금수급연령에 따라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경계선에 걸쳐있는 60~64세 가구주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노령층 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상대적 소득배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성노인 가구주 가구와 남성노인 가구주 가구의 균등화소득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빈곤율의 측정은 상대적 빈곤기준을 사용하였다. 상대적 빈곤선은 OECD 국가 간 빈곤율 비교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의 50%로 정의한다. 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측정하였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한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노령층 소득배분의 국가 간 비교와 적절성 평가

### 1. 세대 간 소득배분의 적절성

#### 가. 절대적 최소보장 기준에서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

소득배분의 적절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평가해줄 수 있는 기준이 빈곤율이다.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결핍된 상태이며, 빈곤율은 최소한의 소득보장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다. 역으로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해당 인구집단에서 빈곤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로, 1-빈곤율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해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각각의 집단에서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를 비교하였다. LIS 자료확보가 가능한 29개국에 대하여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와 근로연령층의 최소소득

보장 충족도를 비교하여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사사분면에 표시해보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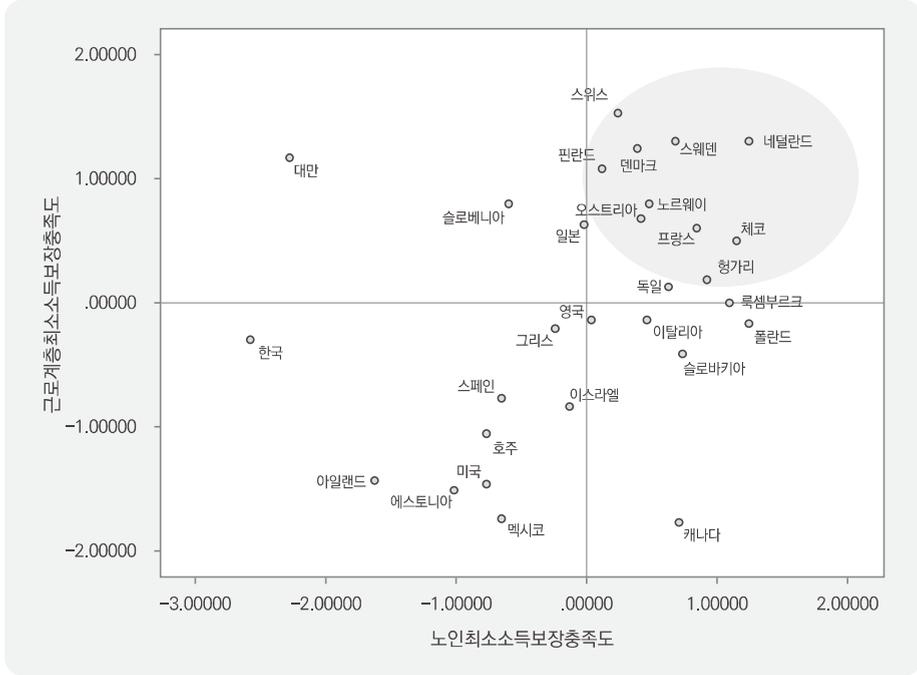
x축은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1-노령층 빈곤율)이고, y축은 근로연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1-근로연령층 빈곤율)이다. 따라서 우측 상단에 있는 국가군들은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최소 소득보장충족도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다. 스위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국가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대륙유럽 국가군,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국가군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한국은 근로연령층 최소 소득보장충족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도 낮은 좌측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근로연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인데 비하여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비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령층 및 근로연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멕시코, 미국, 호주,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우측하단은 근로연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낮지만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높은 집단인데,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등이 속해 있다. 반대로 좌측상단은 근로연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높지만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낮은 집단으로, 대만, 슬로베니아, 일본이 속해 있다.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노령층, 근로연령층에서 모두 높을수록 바람직한 소득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색원이 있는 우측상단의 영역에 포진된 국가군들이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및 세대 간 소득배분의 적절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소득배분을 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최소소득보장충족도 국가 비교



#### 나. 상대적 소득수준 기준에서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

상대적 기준에서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의 노령층에 대한 상대적 소득배분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25~59세 근로연령층 가구주 가구와 65세 이상 노령층 가구주 가구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1인당 가처분소득을 비교하였다. x축은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1-노령층빈곤율)이고, y축은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 가처분 소득비율이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값으로 국가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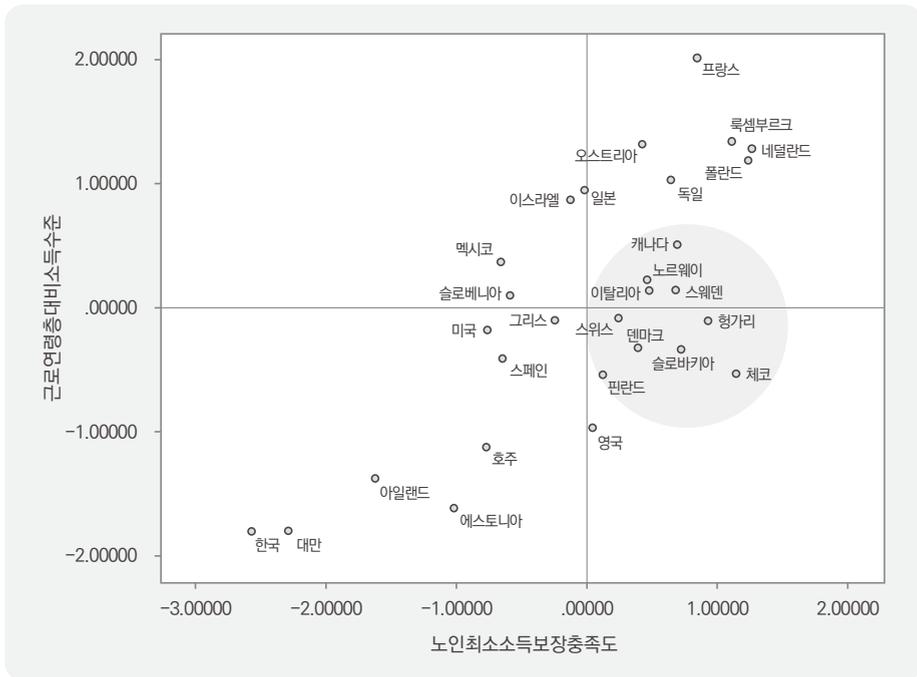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의 1인당 가처분소득 비율은 평균 수준에서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정도가 세대 간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국가들이 노령층에 대한 과도한 배분을 수정중이기 때문이다. 회색원으로 표시된 영역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의 가처분소득비율이 평균대에 있는 국가군은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미국, 스페인, 핀란드, 체코, 캐나

다 등이다. 이 중에서도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충족도가 평균 이상인면서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적정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국가군은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위스, 헝가리, 슬로베키아, 핀란드, 체코, 캐나다 정도이다.

반면,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게 과도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에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이스라엘, 멕시코 등이 속한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 중에서도 멕시코, 이스라엘은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평균 이하라는 점에서 노령층 내 소득배분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호주, 영국, 등은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근로연령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국가들이다. 이 국가군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도 동시에 낮은 국가들이다. 영국은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의 가처분소득비율은 낮지만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림 4.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의 가처분소득 비율 국가 비교



한편,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 가처분소득비율의 분포와 적정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그 값을 비교해 보았다. 복지레짐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 복지레짐 분류에 따른 자유주의국가군, 보수적조합주의국가군, 시민주의국가군, 그리고 남유럽군, 동유럽군, 한국을 비롯한 기타국가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OECD 국가들의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평균적인 소득배분 비율은 74.2% 수준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1.2%였다. 한국은 동비율이 54.7%로 노령층에 대한 상대적 소득배분 비율이 가장 낮았고, 프랑스는 97.2%로 노령층에 대한 상대적 소득배분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레짐별로는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레짐이 89.6%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포함된 기타 국가군이 62.9%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시민주의 복지레짐 76.6%, 남유럽국가군 73.8%, 동유럽국가군 72.4%, 자유주의 복지레짐 68.9% 순으로 나타났다. 동비율이 80%가 넘는 국가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일본, 캐나다가 있었던 반면, 60%에 미치지 않는 국가로는 한국, 대만, 에스토니아, 아일랜드가 있었다.

표 1.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 가처분소득비율

레짐	국가	전체	근로연령층(A)	노령층(B)	B/A(%)
자유주의	호주	28,520	31,282	19,497	62.3
	캐나다	33,111	34,583	27,843	80.5
	아일랜드	23,535	26,128	15,538	59.5
	스위스	51,197	54,861	40,606	74.0
	영국	16,459	18,384	11,762	64.0
	미국	32,062	34,272	24,987	72.9
소계평균					68.9
보수적 조합주의	오스트리아	21,979	22,604	20,244	89.6
	프랑스	19,585	19,752	19,206	97.2
	독일	20,392	21,387	18,447	86.3
	일본	3,242,256	3,375,486	2,882,277	85.4
소계평균					89.6
시민주의	벨기에	707,668	806,840	519,747	64.4
	덴마크	190,702	207,944	148,098	71.2
	핀란드	20,609	22,483	15,479	68.8
	룩셈부르크	36,537	37,514	33,672	89.8
	네덜란드	20,950	21,537	19,182	89.1

레짐	국가	전체	근로연령층(A)	노령층(B)	B/A(%)
	노르웨이	241,736	258,168	197,583	76.5
	스웨덴	191,570	205,736	157,147	76.4
소계평균					76.6
남유럽	그리스	12,372	13,572	10,010	73.8
	이탈리아	15,795	17,216	13,324	77.4
	스페인	13,573	14,943	10,512	70.3
소계평균					73.8
동유럽	체코	166,671	181,337	124,860	68.9
	에스토니아	60,818	69,606	39,542	56.8
	헝가리	1,173,923	1,266,782	934,460	73.8
	폴란드	15,282	15,765	13,897	88.1
	슬로바키아	141,123	154,530	109,945	71.1
	슬로베니아	2,295,354	2,459,699	1,868,403	76.0
소계평균					72.4
기타	한국	18,062,342	19,695,198	10,777,570	54.7
	멕시코	47,969	49,829	39,375	79.0
	대만	476,949	516,878	283,373	54.8
소계평균					62.9
전체평균					74.2
표준편차					11.2
증위값					73.8

## 2. 세대 내 소득배분의 적절성

### 가. 세대 내 소득계층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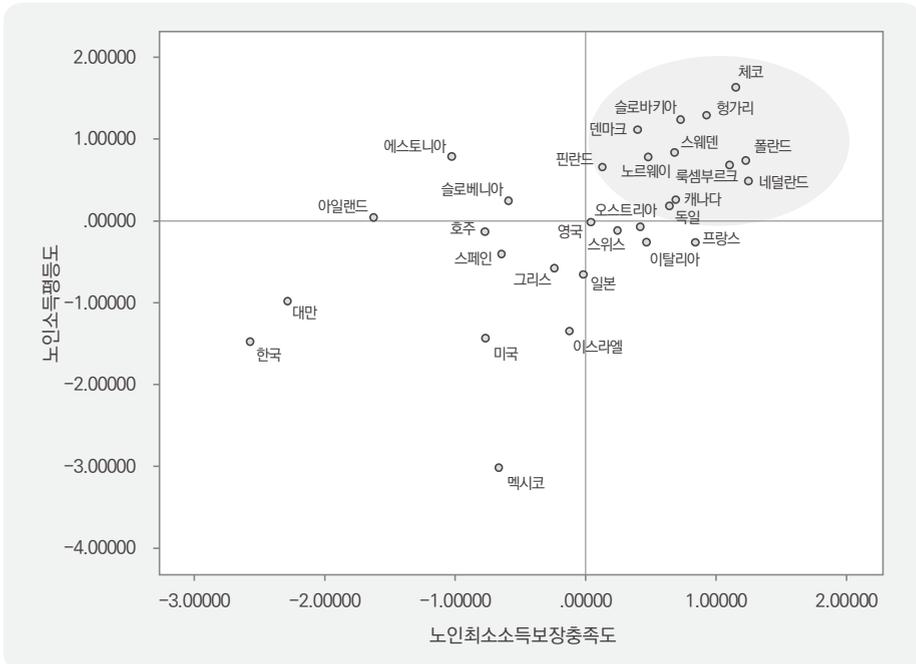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과는 별도로, 세대 내 할당된 자원이 세대 내 소득계층 간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것은 노령집단에 대한 최소소득보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이 평등할수록 최소한의 자원으로 노인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대 간에 소득 배분에서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노령층 내에서 소득배분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효율적인 소득배분이 될 수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비빈곤율)와 노인 소득평등도에 대해 국가 간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였다. x축은 노인 최소소득보장 충족도(1-노령층 빈곤율)이고, y축은 노인 소득평등도(1-노령층 지니계수)이다. 평균값을 중심으로 표준화한 값으로 국가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높고 노인 소득평등도가 모두 높은 우측상단에 분포한 국가군들이 세대 내 소득배분의 평등도가 높은 동시에 노인소득의 최소소득보장이 우수한 국가들이다.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동유럽국가군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군,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대륙국가군, 그리고 캐나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은 노령층 내 소득배분의 불평등도도 가장 높고 최소소득보장충족도도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과 같이 노령층 내 소득배분 불평등도가 높고 최소소득보장충족도가 낮은 국가군에는 한국, 대만, 멕시코, 미국,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호주, 일본 등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노령층 내 소득계층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 국가 비교



## 나. 세대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

노령세대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남성 노인 대비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며, 다른 하나는 남성 대비 여성 노인의 가처분소득수준이다. 먼저,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빈곤율을 비교하였다. x축은 여성노인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1- 여성노인의 빈곤율)이고, y축은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빈곤율 수준이다. 여성 노인의 최소소득보장충족도가 높은 국가군은 우측에 있는 국가군들이 해당된다. 그 중에서도 우측상단에 있는 국가군들은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 노인에 비해 높은 국가군이고, 우측하단에 있는 국가군들은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 노인에 비해 낮은 국가들이다. 남성 대비 여성 노인빈곤율이 유사한 국가들은 y 축 값의 평균대에 분포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여성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평균 이상이면서 남성 대비 여성 노인빈곤율이 젠더 중립적인 국가들에는 스웨덴,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여성 노인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이지만 남성 대비 여성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국가로 나타났다.

다음은 노령층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을 비교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인 남성 대비 여성 노인의 가처분소득수준을 비교하였다. x축은 여성노인 최소소득보장 충족도 (1- 여성노인의 빈곤율)이고, y축은 남성 노인 대비 여성 노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이다.

여성의 최소소득보장충족도가 평균 이상이면서 남성 대비 여성의 가처분소득비율이 젠더 중립적인 국가들에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여성 노인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이지만, 남성 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그림 6. 노령층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 국가 비교: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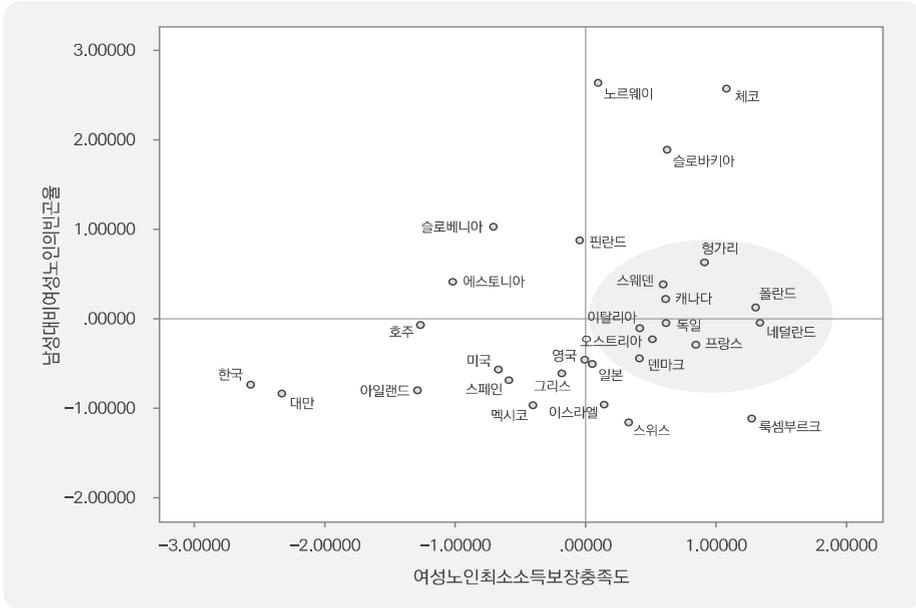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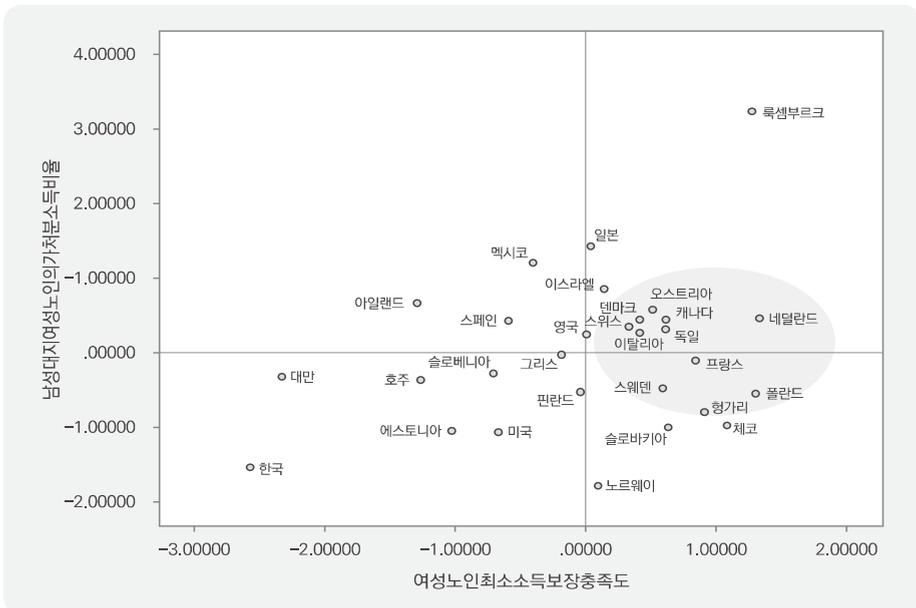


그림 7. 노령층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 국가 비교: 소득수준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을 비교한 기준인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빈곤율과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비율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 반대영역에 분포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빈곤율이 높을수록, 즉 도표의 상측에 위치할수록 여성노인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이며,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이 낮을수록, 즉 도표의 하측에 위치할수록 여성노인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대비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특이한 국가에는 한국, 대만이 있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여성 노인의 최저소득보장 충족도가 매우 낮은 국가이다. 즉 여성노인 및 남성노인이 모두 빈곤율이 높은 국가이며, 노인소득수준의 젠더격차 측면에서는 젠더 불평등이 높은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

## V.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통합기준에 따른 국가 유형화 및 특징

### 1. 노령층 소득배분 특성별 국가 유형화

앞에서 살펴본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구성하는 평가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한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성을 구분짓는 핵심질문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절대적 수준에서 적절한가. 최종 가처분소득기준으로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 불충족도, 즉 노인빈곤율; 둘째,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비율은 적절한가.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의 가처분소득비율; 셋째, 노령 집단 내 소득계층별 소득배분은 공평한가. 노령집단의 GINI 계수; 넷째, 노령층 집단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은 공평한가. 노령층 남성 대비 여성의 가처분소득 비율.

상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OECD 국가를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군집분석을 하기 전에 변수의 상이한 단위를 표준화하였다. 표준화는 Excel에서 NORMDIST 함수를 이용하여 지정한 평

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규 분포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표준화하였다. 그런 다음 K-means 군집분석(4~6개 군집) 방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제곱유클리디안거리 활용)방법으로 수행한 결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 K-means 6개 군집을 최종 분석결과로 사용하였다. K-means 6개 군집의 최종 군집중심은 <표 2>와 같으며, 군집별 소속 국가 들은 <표 3>과 같다.

표 2. K-means 군집분석에 의한 최종 군집중심

구분	군집					
	1	2	3	4	5	6
노령층 빈곤율	.20	.86	.21	.65	.47	.92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의 가처분소득 비율	.54	.09	.89	.59	.39	.18
노령층 지니계수	.16	.44	.45	.81	.41	.92
남성 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 비율	.19	.42	.69	.74	.57	.19

표 3. 새로운 군집별 소속 국가

군집	국가	케이스 수
1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6
2	호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3
3	캐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
4	일본,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	4
5	스위스, 영국,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7
6	미국, 한국, 대만	3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군집 1은 에스핑 앤더슨 복지 레짐 분류에 따르면 스웨덴, 노르웨이 등 사민주의 국가군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되었다. 군집 2는 자유주의에 속하는 호주,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가 포함되었으며, 군집 3에는 보수적조합주의 레짐에 속하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캐나다가 포함되었다. 군집 4에는 남유럽국가인 스페인, 그리스와 일, 멕시코가 포함되었으며, 군집 5에는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등 사민주의 국가군, 스위스, 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군, 남유럽 이탈리아, 동유럽 슬로베니

아 등 전통 복지레짐의 기준에서 매우 혼합된 특성의 국가들이 함께 포함되었다. 군집 6에는 미국, 한국, 대만이 포함되었다.

군집 1은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노령빈곤율이 가장 낮고, 노령층 내 소득배분 격차가 가장 작지만, 노령층 내 젠더 격차는 평균보다 큰 편이다. 군집 2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에 매우 인색하고, 노인빈곤율도 매우 높은 편이지만, 노령층 내 소득배분 격차는 평균보다 작으며, 노령층 내 젠더 격차는 평균보다 약간 큰 편이다. 군집 3은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매우 관대하고 빈곤율도 낮은 편이며 노령층 내 젠더 소득배분 격차도 매우 작은 편이지만, 노령층 내 소득배분 격차는 평균보다 약간 큰 편이다. 군집 4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매우 관대한 편이지만, 노인빈곤율은 높은 편이며, 노령층 내 소득배분 격차도 큰 편인데, 노령층 내 젠더 간 소득배분 격차는 작은 편이다. 군집 5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낮은 편이지만, 노인빈곤율은 낮은 편이며, 노령층 내 소득배분 격차도 작은 편이며, 노령층 내 젠더 간 원배분 격차도 작은 편이다. 군집 6은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매우 낮은 편이며, 노령빈곤율도 가장 높고, 노령층 내 소득배분 격차도 매우 크며, 노령층 내 젠더 간 소득배분 격차도 가장 크다. 노령층에 대한 상대적, 절대적 소득배분이 작고, 노령층 내 소득배분 불평등도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표 4.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특징별 군집의 순위

순위	노령층 빈곤율		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가처분소득비율		노령층 지니계수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가처분소득비율	
	유형	값	유형	값	유형	값	유형	값
1순위	1군집	7.9	3군집	88.7	1군집	0.210	3군집	84.3
2순위	3군집	8.4	4군집	77.1	5군집	0.263	4군집	83.9
3순위	5군집	18.2	1군집	75.8	2군집	0.270	5군집	80.2
4순위	평균	19.1	평균	74.2	3군집	0.271	평균	79.1
5순위	4군집	24.3	5군집	70.8	평균	0.280	2군집	77.5
6순위	2군집	33.9	6군집	60.8	4군집	0.367	1군집	73.2
7순위	6군집	43.5	2군집	59.5	6군집	0.377	6군집	72.9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을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군은 군집 1, 군집 3, 군집 5이다. 그런데 군집 1과 군집 5는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

분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 즉 자원투입의 절대적 양이 크지 않으면서도 노인빈곤율을 낮게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군집 1과 군집 5는 노령층에 대한 최소소득보장 목표를 자원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성장 초고령사회에서 주목할만한 유형이다. 군집 3은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배분 투입이 높고 빈곤율도 낮게 관리되고 있지만, 노령집단 내 소득배분 격차는 군집 1 및 군집 5에 비해서는 크다는 점에서 군집 1 및 군집 5에 비해 자원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군집 1은 노령집단 내 젠더 간 소득배분 격차가 큰 것이 취약점으로 나타났다. 군집 5는 노령층내 소득평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분배정의 측면의 성과가 탁월하지는 않다.

반면 노인빈곤율이 높은 군집 6, 군집 2, 군집 4의 특징을 보면, 군집 6과 군집 2는 노령집단에 대한 소득배분의 상대적, 절대적 수준이 낮고, 노령집단 내 소득계층 간 소득배분 격차와 젠더 간 소득배분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노령집단에 대한 사회적 소득배분이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군집이라 말할 수 있다. 반면 군집 4는 노령집단에 대한 소득배분의 크기는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령층 빈곤율이 높고 노령집단 내 소득배분 격차도 큰 편이라는 점에서 노령층 소득계층 간 소득배분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 군집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주요 특징

군집	국가	특징
1군집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령빈곤율은 가장 낮은 수준(1위)</li> <li>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 비율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3위)</li> <li>노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가장 낮은 수준(1위)</li> <li>노령집단 내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소득배분 비율은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5위)</li> </ul>
2군집	호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령빈곤율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매우 높은 편임(5위)</li> <li>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6위)</li> <li>노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3위)</li> <li>노령집단 내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소득배분 비율은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5위)</li> </ul>
3군집	캐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령빈곤율은 평균 보다 매우 낮은 수준(2위)</li> <li>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1위)</li> <li>노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4위)</li> </ul>

군집	국가	특징
4군집	일본,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령집단 내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소득배분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1위)</li> <li>노령빈곤율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4위)</li> <li>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 비율이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2위)</li> <li>노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5위)</li> <li>노령집단 내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소득배분 비율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2위)</li> </ul>
5군집	스위스, 영국,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령빈곤율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3위)</li> <li>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 비율이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4위)</li> <li>노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매우 낮은 수준(2위)</li> <li>노령집단 내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소득배분 비율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3위)</li> </ul>
6군집	미국, 한국,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령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6위)</li> <li>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 비율이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5위)</li> <li>노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가장 높은 수준(6위)</li> <li>노령집단 내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소득배분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6위)</li> </ul>

## 2.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간 관계

노령층 소득배분 유형과 사회경제적 특성 간 결합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고령화율, 1인당GDP, 고용률, GDP대비 국가재정적자율,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GDP대비 사회지출비율, GDP대비 연금지출비율을 살펴보았다. 노령층 빈곤율 및 불평등도를 효과적으로 낮춘 1, 3, 5군집 국가군의 경우 사회지출비율 및 연금지출비율이 높은 것과 밀접한 결합관계를 보였다. 또한 이들 국가군의 경우 국가부채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국가재정적자율은 일관적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노령층 빈곤율 및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는 사회지출비율 및 연금지출 비율이 낮은 것과 밀접한 결합관계로 나타났다. 국가부채율 및 국가재정적자율은 군집에 따라 일관적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경제선진국인 OECD 국가들의 경우 노령층에 대한 효과적 소득배분이 1인당 GDP 수준과는 크게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6. 국가간집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의 결합관계

군집	국가	노령층 소득배분 특성			사회경제제도적 특성							
		노인 빈곤율	노령연령대비 노령소득비율	노령연금대비 노령소득비율	노령 집단 GINI 계수	남성노인대비 여성노인소득비율	고령화율	1인당 GDP	고용률	국가 재정 적자율	국가 재정 부채율	사회 지출 연금 지출 비율
1군집	노르웨이	12.9	76.5	0.231	67.7	14.9	47,640	75.2	15.2	49.2	21.6	4.8
	스웨덴	10.3	76.4	0.227	76.1	17.5	32,701	74.5	2.1	61.3	29.4	7.6
	체코	4.2	68.9	0.171	72.9	14.1	21,268	64.8	-3.5	34.8	19.5	7
	헝가리	7.1	73.8	0.195	74.0	15.9	16,975	56.9	-7.8	68.6	22.5	8.5
	폴란드	3.2	88.1	0.234	75.6	13.8	13,786	53	-4.3	50.2	21	11.4
2군집	슬로바키아	9.7	71.1	0.199	72.7	11.6	16,175	57.7	-2.8	39.1	16.6	6.2
	평균 (순위)	7.9 (1)	75.8 (3)	0.210 (1)	73.2 (5)	14.6 (4)	24,758 (5)	64.0 (4)	-0.2 (2)	50.5 (3)	21.8 (3)	7.6 (3)
	호주	29.2	62.3	0.295	76.8	13.1	35,005	71.6	1.2	16.8	17.1	3.3
	아일랜드	40.3	59.5	0.283	83.3	11.2	38,761	67.1	1.2	32.8	16.7	3.4
	에스토니아	32.4	56.8	0.231	72.4	16.7	16,531	50.9	1.9	4.4	12.6	5.3
3군집	평균 (순위)	34.0 (5)	59.5 (6)	0.270 (3)	77.5 (4)	13.7 (5)	30,099 (4)	63.2 (6)	1.4 (1)	18.0 (1)	15.5 (5)	4.0 (5)
	캐나다	10.2	80.5	0.268	81.1	12.5	35,106	72.5	1.6	70.3	16.5	4.1
	오스트리아	13.7	89.6	0.291	82.8	15.8	33,637	68.6	-1.7	69.5	27.2	12.4
	프랑스	8.2	97.2	0.304	78.4	16.7	29,554	62.3	-3	75.4	29.2	12.4
	독일	10.8	86.3	0.273	81.9	18.7	31,117	65.5	-3.4	71.1	26.7	11.4
유럽부르크	룩셈부르크	4.8	89.8	0.238	99.7	13.6	68,211	63.6	-0.1	7.7	23.2	7.2
	네덜란드	2.9	89.1	0.252	82.0	13.5	35,111	71.1	-0.3	61	20.9	5
	평균 (순위)	8.4 (2)	88.7 (1)	0.271 (4)	84.3 (1)	15.1 (3)	38,789 (1)	67.3 (3)	-1.2 (5)	59.2 (4)	24.0 (2)	8.8 (1)

군집	노령층 소득배분 특성				사회경제제도적 특성							
	국가	노령층 소득배분 특성	노인 빈곤율	노령연금대비 노령소득비율								
4군집												
일본	19.4	85.4	0.332	88.1	20	30,446	69.3	-6.4	177.3	18.6	9.3	
그리스	22.3	73.8	0.327	78.9	18.5	24,348	60.3	-5.2	112.3	20.5	11.8	
스페인	27.6	70.3	0.314	81.8	16.7	27,392	64.3	1	50.6	21.2	8.1	
멕시코	27.8	79.0	0.497	86.8	6.3	12,461	59.6			7.4	1.2	
평균 (순위)	24.3 (4)	77.1 (2)	0.367 (5)	83.9 (2)	15.4 (2)	23,662 (6)	63.4 (5)	-3.5 (6)	113.4 (6)	16.9 (4)	7.6 (3)	
5군집												
스위스	16.0	74.0	0.294	81.3	15.9	36,648	77.2	0.4	56.4	20.3	6.8	
영국	18.7	64.0	0.287	80.7	15.9	33,318	72.6	-3.5	46.5	21.3	5.6	
벨기에	21.2	64.4	0.236	83.7	17.2	32,204	61	-0.1	94.5	26.4	9	
덴마크	14.0	71.2	0.208	81.9	15.4	33,196	75.5	4.6	42.2	27.1	5.4	
핀란드	17.5	68.8	0.240	75.8	16	30,708	68	2.5	48.4	26.1	8.4	
이탈리아	13.1	77.4	0.304	80.8	19.3	28,280	57.5	-4.3	120.5	25	13.9	
슬로베니아	26.9	76.0	0.269	77.3	15.5	23,472	66	-1.5	29	23	9.9	
평균 (순위)	18.2 (3)	70.8 (4)	0.263 (2)	80.2 (3)	16.5 (1)	31,118 (3)	68.3 (1)	-0.3 (3)	62.5 (5)	24.2 (1)	8.4 (2)	
6군집												
미국	29.1	72.9	0.386	72.3	12.3	44,242	71.5	-3.6	62.4	15.9	6	
한국	52.6	54.7	0.390	69.2	9.6	22,783	63.7	3	24.7	6.9	1.5	
평균 (순위)	43.5 (6)	60.8 (5)	0.377 (6)	70.7 (6)	11.0 (6)	33,513 (2)	67.6 (2)	-0.3 (3)	43.6 (2)	11.4 (6)	3.8 (6)	
전체평균	18.1	74.9	0.278	79.1	14.9	30,396	65.8	-0.6	58.4	20.7	7.4	

주: ( )안은 군집별 순위

## VI. 결론: 한국 노령층 소득배분에의 시사점

이 논문은 자원이 제약된 저성장 (초)고령사회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탐색하기 위해,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균형적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의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적절성을 비교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2050년경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한국 사회는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배분 수준으로 노령층의 빈곤율을 잘 방어하는 소득배분 모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궁극적 관심은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수준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면서도 노령층에 대한 기본보장을 달성하여 노인빈곤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국가군의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효율적인 자원할당으로 노령층의 기본보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소득배분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것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소득배분 모델이기 때문이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 소득배분의 상대적 크기, 노령층 소득배분의 결과 노인빈곤율의 상대적 수준, 노령층 집단 내 소득계층 간 소득분배 평등도, 노령층 집단 내 젠더 간 소득분배 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구성하는 평가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하고, 이 유형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친화적 결합관계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절대적 최소보장의 측면에서 세대 간 공평성이 높은 국가는 에스핑 앤더슨 복지레짐 분류에 따른 시민주의, 보수적조합주의, 동유럽 국가군이었으며, 반대로 자유주의, 남유럽 국가군, 한국 등은 노령층 소득배분이 취약했고, 캐나다는 근로연령층 소득배분이 취약했다. 상대적 소득배분의 측면에서 세대 간 공평성이 높은 국가는 시민주의, 동유럽 국가군, 스위스, 캐나다 등이었으며, 한국, 영국, 호주 등은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취약했고, 보수적조합주의 국가군은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취약했다. 한편, 노령층 내 계층 간 소득배분이 평등한 국가는 시민주의, 보수적조합주의, 동유럽 국가군이었으며, 노령층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이 평등한 국가는 시민주의, 보수적조합주의, 동유럽

럽 국가군이였다.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의 평균수준은 74%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그 절대적 및 상대적 수준에서 열악할 뿐 아니라 노령층내 계층 간 소득불평등도도 매우 높고 공적연금의 이전소득에 의한 불평등 개선정도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배분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을 축소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달리, 한국은 노령층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배분을 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노령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5% 노인이 평균 35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연금제도가 더욱 성숙한 2050년경에도 약 60% 노인이 70~80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중하위 70% 노인에게 평균소득 10% 수준인 20만원의 무각출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적용율 및 유지율이 미흡하여 노령소득원으로서 주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석재은, 2015).

이와 같은 한국의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한국의 2050년경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10%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OECD 국가의 2050년경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11.7% 수준으로 전망된다. 반면 2050년경 노령인구 비율은 한국은 38.7%, OECD 국가평균 25.4%로, 오히려 한국의 노령인구

비율이 1.5배 높다. 즉 한국은 노령층에게 할당된 자원배분의 절대량은 더 작고 이를 나눠가질 노령인구는 더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 시점 뿐만 아니라 고령화율이 정점에 달하는 2050~60년경에도 노령층에 대한 최소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배분의 절대적 크기는 여전히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과제는 세대 간 공정성 보다는 노령최소소득보장에 보다 우선적인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세대 간 합의에 의해 노령층에 할당된 배분자원이 노령집단 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효율적 소득배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세대 간 연금의 정치 역동성과 세대 내 연금의 정치 역동성을 잘 고려하여 효율적 소득배분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결과에서 노르웨이, 스웨덴과 동유럽국가군이 속한 1군집이 자원효율성이 높으면서도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률이 높은 국가군이였다. 최소자원으로 최소소득보장 충족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소소득보장이 미달된 노령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공공부조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르피와 팔메(Korpi & Palme, 1998)의 재분배의 역설에서 주는 교훈과 같이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는 선별적 제도는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해 적절한 소득배분의 크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노령층 내 평등한 소득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소득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석재은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보장, 연금, 장기요양이며, 현재 양극화, 세대갈등, 돌봄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eokje@hallym.ac.kr)

김봉근은 미국 미시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세대 간 계층이동, 소득이전이며, 현재 양극화, 계층이동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bgkim07@snu.ac.kr)

임병인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사회보장정보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 연금이며, 현재 양극화, 빈곤, 사회보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billforest@chungbuk.ac.kr)

## 참고문헌

---

- 권문일. (2006). 여성연금수급권 확충전략에 대한 국제 비교. *한국사회정책*, 13, pp.229-253.
- 김경아. (2012). 노인빈곤과 노인소득불평등의 실태: 국제비교와 시사점. 2012년 사회적  
책임합 공동학술대회자료집.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회.
- 김용하. (2011).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18(2),  
pp.209-241.
- 김태일. (2015). 국민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예산정책연구*,  
4(2), pp.31-55.
- 류연규, 황정임. (2008). 국민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 : 급여 적절  
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4(2), pp.73-112.
- 석재은. (2003).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한국인구학*, 26(1), pp.79-113.
- 석재은. (2012).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짐의 귀적: 젠더통합 전략을 통한 젠더평등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28(3), pp.95-144.
- 석재은. (2013). 한국의 노령여성은 왜 특별히 가난한가? *사회복지조사연구*, 36, pp.61-102.
- 석재은. (2014).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  
책의 특성. *보건사회연구*, 34(4), pp.5-35.
- 석재은. (2015).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미나*.
- 임병인, 전승훈. (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pp.421-436.
- 전승훈, 강성호, 임병인. (2009).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자산충  
분성. *경제학연구*, 57(3), pp.67-100.
- Abatemarco, A. (2009). Measurement issues for adequacy comparisons among  
pension systems, *ENEPRI Research Report No. 64*. Brussels: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 Bonoli, G. (2003). Two Worlds of Pension Reform in We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s*, 35(4), pp.399-416.
- Bolini, G. & Shinkaw, T. (2005). *Ageing and Pension Reform Around the World*:

- Evidence from Eleven Countries.* Edward Elgar.
- Esping-Anderso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on, G. et al.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2010). *Progress and key challenges in the delivery of adequate and sustainable pensions in Europe.* European Economy Occasional Papers 71,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12). *An agenda for adequate, safe and sustainable pensions, White Paper COM(2012) 55 final.*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12). *Pension adequacy in the European Union 2010-2050.*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oc. 10488/12 ADD 1.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15). *The 2015 Pension Adequacy Report: current and future income adequacy in old age in the EU.*
- Ferrera, M. (2005). *The Boundaries of Welfa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pp.661-687.
- Grech, A. G. (2010). *Assessing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reforms in Europe.* CASEpaper 140. London: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SE.
- Grech, A. G. (2013). *How best to measure pension adequacy.* CASEpaper, London: Center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SE.
- Holzmann, R. & Hinz, R. (2005).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Myles, J. (2002) A New Social Contract for Elderly. in Gosta Esping-Anderson et al.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pp.130-172.

- OECD. (2013).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Aging Societies: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29 OECD Countries*.
- OECD. (2015). *Pension at a Glance 2015*.
- Rhodes, M. & Natali, D. (2003). Welfare Regimes and Pension Reform Agendas. *Contribution to the Conference on 'Pension Reform in Europe: Shared Problems, Sharing Solution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5.
- Yamada, A. (2002). *The Evolving Retirement Income Package: Trends in Adequacy and Equality in Nine OECD Countries*. OECD WD 7.
- Wolf, C. (2003).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R.G. Frey and C. H. Wellman. (2003). *A Companion to Applied Ethics*. Blackwell Publishing.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dequacy of Income Distribution for the Aged in OECD Countries

**Seok, Jae Eun**

(Hallym University)

**Kim, Bongg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Im, Byung-In**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

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

**Keywords:** Old-Aged Income, Income Distribution, Distributional Justice, Inter-generational Equity, Intra-generational Equality, Gender Equality, LIS